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)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1.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
2.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·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 할 것
3.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과약, 열람,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
4.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할 것

제39조의2의 제목“(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)”을“(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인 신용정보”란 1만명 이하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.

제43조의7제5항 중 “개인신용정보”를 “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”로 한다.

별표 6 제3호의 영 [별표2]의 금융질서 문란정보란 다음에 청약철회권 행사 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청약철회권 행사 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 |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 정보 보유기관 | ○ 해당 개인 | 위와 같음 | ○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22조의4(개인신용정보가 포함 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) 영 제1 7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구분 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 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 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할 것 2.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·통제 절차를 수립·운 영 할 것 3.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 황파악, 열람,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.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 을 수립·시행하고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 또는 대표이사 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|
| <p>제39조의2(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</p> | <p>제39조의2(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</p> |

| | |
|--|---|
| <p><u>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</u>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43조의7(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) ① ~ ④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<u>개인신용정보</u>를 수집·이용·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<u>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</u>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<u>개인신용정보</u>"란 1만명 이하의 <u>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</u>를 말한다.</p> <p>제43조의7(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 <u>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</u>----- -----.</p> |
|--|---|